이천 중리지구 신안인스빌 퍼스티지 중도금 대출 방문예약 신청안내

이천중리 A-2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티지 계약자님 제위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고객님의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임직원 일동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성실시공으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용하는 신안인스빌 퍼스티지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자님이 중도금대출 서류접수 시 오랜 대기시간 및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대출 서류 접수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예약제(선착순)를 운영하오니, 계약자님께서는 반드시 당사 인스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원하는 날짜, 시간대를 지정하여 방문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예약 없이 내방하는 경우 대출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도금 대출 방문예약 신청

신청기간	2025. 11. 17(월) 09:00 부터 ~ 2025. 11. 19(수) 16:00 까지			
신청방법	인스빌 홈페이지(http://www.ensvil.com)			
시간구분	09:30~10:30 / 10:30~11:30 / 13:00~14:00 / 14:00~15:00 / 15:00~16:00			

1 2

2. 중도금 대출 방문예약 신청방법





SECULAR SECU

1) 인스빌 홈페이지 접속(http://www.ensvil.com)

- 입주정보 → 중도금대출 방문예약 클릭
- 입주단지 선택(이천중리 신안인스빌 퍼스티지)
- 계약자 정보 입력(동.호수/성명/생년월일)
- 2) 희망일자 시간대 클릭
- 선착순 운영
- 3) 예약하기클릭
- 방문날짜, 방문시간 확인 필수



이천 중리지구 신안인스빌 중도금대출 안내장

대출대상	□ 이천 중리지구 신안인스빌 아파트 수분양자 中 - 계약금 5% 및 10% 이상 납부한 분양계약자 중 소독증빙이 가능한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농협 대출 대상자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대출금리	예탁금전국평균금리(신규) (6개월 변동) + <u>1.48%</u>					
	※ 중도금 대출금리는 중도금 1회차 실행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확정되며 6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 1회차 실행일 기준으로 4.30%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가산금리가 결정됩니다. ※ 입주지정개시일부터 이자납부의무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자 후불제 적용)					
대출한도	□ 분양가액(옵션금액 제외)의 60%이내(중도금1~6회차)(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발급 범위 내) ※ 정부의 정책, 당행 주택자금대출 규정,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최초 대	출 실행일로부	부터 2027	7년 02월까지 (1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원금 만기 일시상환 / 대출이자 매 1개월 후취로 납부)					
부대비용	□ 수입인지대금(50% 고객부담): 75,000원 (자서완료 후 안내받는 농협 인지세납부계좌에 이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고객부담): 보증금액의 연 0.13% (보증료 할인대상은 후면 참조)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서류접수	□ 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 11월 22일(토) [3일간] 09:30 ~ 16:00 □ 장소 : 경기 이천시 증포동 30-1 일원 (이천 중리지구 신안인스빌 견본주택)					
	지역농합 기존 지역 기존 지역 (거래정지 대포통장 비대면입 근처 지역	입출금통장 역농협 입출금 I, 사고등록계 명의인, 단기 (출금통장 개 역농협 방문(3	계좌가 변 구통장 계 기좌 및 등 기간 다수 설 진행! 하여 한도	서 발급 시 보증료환급 및 자동이체계좌번호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mark></mark>		
	구분	내용				
비대면 입출금통장개설	가입매체	■ 수마트뱅킹, 꼭뱅크				
	이용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0:30 ~ 24:00		
		스마트뱅킹	요구불	■ 뱅킹 >금용상품基 >농축협 >예금 >입출금 >MY콕통장 또는 주머니 (money)통장 가입하기		
	가입경로	곡병크	요구불	■ 금융상품 >가입상품(입출금)선택 >상품판매영업점 선택 >MY콕통장 또는 주머니(money)통장 가입하기 ■ 전체메뉴 >금융상품 >예·적금 > 가입상품 선택 >상품판매영업점 선택 >가입하기		
		9				

공통서류

- ① 분양계약서 원본(반드시 지참) 및 계약금(5% 및 10%) 납부영수증(혹은 입금영수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모바일 신분증 불가), 인감도장
- ③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모두 표시)
 - 배우자와 별도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인적사항변동내역 포함) 본인 배우자, 등본 상 세대원 모두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표시)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금융기관제출용) ☞ 본인, 배우자 모두 필요
- ⑦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 분양계약서상 서명날인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에 '중도금대출용' 기재)
- ⑧ 국세완납증명서
- ⑨ 지방세완납증명서
- ⑩ (국세)납부내역증명(2022년도 ~ 현재까지)
- ⑩ 아래의 소득증빙서류 중 해당 되는 서류 일체
- ※ 모든 서류는 2025년 11월 17일 이후 (17일 포함) 발급분만 인정
- ※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통서류 각각준비
- ※ 유효기간 만료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소득서류의 경우 2025년 기준 최근 2개년도는 2024, 2023년도입니다.

제출서류

소독증빙서류				
급여소특자	□ 재직증명서 □ 최근 2개년도의 소독금액증명원(근로소독자용) 또는 최근 2개년도의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반드시 직인날인) □ 단기재직자(1년 이내 근무)의 경우 월급여명세표(3개월분, 직인날인 또는 급여통장 급여이체 거래내역서 첨부하여 소독 증빙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도의 소 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또는 최근 2개년도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규사업자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자 서류 준비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	□ 위촉계약서 등 □ 최근 2개년도의 소 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2개년도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 최근 1년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연금증서 상 연금수령액 미표기 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기타소 <mark>득자</mark> (무소득자 포함)	□ 기타소독자(무소독자)는 세무서의 소독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반드시 제출 + □ 사실증명원 발급 후 아래 ②,⑤,⑥ 중 증빙 가능한 자료 함께 제출 ② 최근 1년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만 인정, 미납금액 없어야 함. ⑥ 최근 1년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공단 발급분, 미납금액 없어야 함. ② 최근년도 연말정산용 카드사용금액확인서(홈택스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인피부양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생략가능			

	금융기관		담당자	문의전화
	서울서남부농협	난곡지점	이민우	02-855-8850
	원주축산농협	본점	염희성	033-738-6511
	남광주농협	본점	이경훈	062-600-3300
	이천농협	본점	송지훈	031-633-7151
	대전축산농협	본점	윤은총	042-485-7541
PEROIOLEI	제주시농협	본점	김병철	064-750-6154
담당영업점	제천단양축산농협	장락지점	선정훈	043-640-3271
	지도농협	본점	호혜진	031-931-1617
	춘천농헙	본점	홍춘구	033-269-5224
	북광주농합	본점	정진왕	062-571-0481
		관리 <mark>대</mark> 상자이거나		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저소독가구 (40%할인)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 소특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자녀가구 (40%할인)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기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40%할인)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령자기구 (40%할인)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단, 보증신청인 본인이 단독세대주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는 60%할인)	□ 주민등록등본
	노인부양가구 (40%할인)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
보증료할인	신혼부부 (40%할인)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독이 60백만원 이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 본인 및 배우자 소독확인서류 - 소독급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 등 - 소독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기준	한부모가구 (60%할인)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40%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귀화로 국적취득자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가유공자 가구 (40%할인)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거나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경우로 확인원을 통해 유공자 본인 혹은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각 대상자별 (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적용대상(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40%할인)	피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모범납세자 (10%할인)		□ 모범납세자 증명서 - 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